

[별표 1]

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
※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(표1~4)는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른 것이며,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단,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표1]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

(단위: 원)

장기요양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 지원등급	본인 부담률
월 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	일반 대상자: 15% 의료 대상자: 6% 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 기초생활수급자: 0%

[표2]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(단위: 원)

분류	금액	분류	금액	분류	금액
30분 이상	17,450	120분 이상	43,430	210분 이상	63,530
60분 이상	25,320	150분 이상	50,640	240분 이상	70,080
90분 이상	34,120	180분 이상	57,020		

[표3]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(단위: 원)

분류	금액	본인부담		
		15%	9%	6%
차량이용(차량 내 목욕)	88,990	13,349	8,009	5,339
차량이용(가정 내 목욕)	80,230	12,035	7,221	4,814
차량미이용 60분 이상	50,100	7,515	4,509	3,006

[표4]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

서비스 제공시각	금액
22시 이후 06시 이전	[표2]의 급여비용의 30% 가산
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』에 따른 일요일	
『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』에 따른 유급휴일	[표2]의 급여비용의 50% 가산
『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근로자의 날	